

(기준가액) (구조) (용도) (위치) (잔가율)

$$165,000\text{원} \times \frac{100}{100} \times \frac{100}{100} \times \frac{100}{100} \times 0.896 = 147,840\text{원}/\text{m}^2$$

○ 전용부분 $147,000\text{원} \times 75.66\text{m}^2(\text{면적}) \times 0.95(\text{감산}) = 10,565,919\text{원}$

$$\Rightarrow \text{세액} : 10,565,919\text{원} \times \frac{3}{1000} = 31,697\text{원} \text{ ①}$$

○ 공용부분 $147,000\text{원} \times 25.37\text{m}^2(\text{면적}) \times 0.95(\text{감산}) = 3,542,920\text{원}$

$$\Rightarrow \text{세액} : 3,542,920\text{원} \times \frac{3}{1000} = 10,628\text{원} \text{ ②}$$

○ 재산세총액 (①+②) = 31,697원 + 10,628원 = 42,325원

※ 동일물건에 대한 2000년도 재산세 42,900원 대비 $\Delta 1.3\%$

IV. 선박 등 其他物件 時價標準額 調整內容

1. 개 요

여기서 기타물건의 범위는 『토지·건물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물건』으로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세목별로 그 범위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.

<세목별 기타물건의 과세대상 범위>

○ 취득세 과세대상

-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특수부대설비(부수시설물), 건축물(레저시설 등 건축물), 임목, 어업권, 광업권, 골프·콘도·체육시설회원권 등

○ 등록세 과세대상 :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광업권 등